



통권 493호

2024

09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 3일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가족 행복캠프’를 진행하였다.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캠프는 올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자녀 42명을 포함한 비혼모 37가정이 참여하여 가정에 필요한 가족법 교육, N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교육과 상담 등을 받고 다양한 가족소통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관련 내용 16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귀영화도
패 : 패가망신도
방 : 방심하면 한 순간
지 : 지금부터 청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4 • 이달의 메시지
6 • 가족법 개정 소식
7 • 특별기고 | 출생통보제의 시행, 관련 제도의 변화
16 • 교육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 캠프
24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⑦
27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②
28 • 가정폭력상담실
30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킨
33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저출생 그리고 자살률 1위의 한국 사회,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 깊이 고민해야

폭염과 열대야로 지쳤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한다지만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기록적인 열대야 이런 경험이 계속되다 보니 ‘기후 위기’가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인류가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조금씩 느껴지는 가을 앞에서 예년보다 빨리 온 추석 명절의 달력을 보다 보니 새삼 오늘 우리에게 가족과 공동체란 무엇인가, 여러 상황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족과 가정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혹은 대안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각종 사회 지표와 통계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뒤늦게 발견된 이들에 관한 보도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이와 더불어 OECD 통계 작성 이래 거의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저출생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는 자살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년 동안 자살자 수가 급증하면서, 1992년부터 2005년 사이 인구는 10% 늘었는데 자살자 수는 3배가 되었습니다. 자살자 수가 330% 늘어나는 사이, 출생률은 1.76에서 1.08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하지만 이 비슷한 시기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전 지구적인 추세나 인류사적 변화가 아니라 순전히 ‘한국적인’ 일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낮은 출생률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출산, 교육의 총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시스템의 문제에 더 큰 요인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 또한 개인적이거나 문화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죽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살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와 사회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상당수 젊은이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은 줄어들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만연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경하여 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초반이 홀로 아사하는 현실, 폐업한 여관에서 홀로 지내다 죽은 지 5년 후에야 발견된 이에 관한 뉴스가 일상으로 흘러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라도 가까이에서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허무하게 스러지지 않아도 될 귀한 생명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거의 매일 마스크를 통해 듣고 봅니다.

가족과 가정만큼 그 내용을 채워줄 우리 사회 공동체의 복원,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선 그 무엇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낯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웃은 층간소음의 유발자인 경우가 더 많고, 다음 세대쯤 되면 ‘사촌’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 단어가 되어 있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흐름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혼인과 출산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일 수 있어야 하고, 비혼과 출산하지 않는 삶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더 열린 사회,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성공으로 다채로운 사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가정 그리고 그 가족과 가정의 내용과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의 구현 등 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이루어진 사회를 향해 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르게 추석을 맞이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상속권 상실 신고 제도 도입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권 상실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와 상속권 상실 청구 (제1004조의2 제1항 신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혹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제1004조의2 제3항, 제4항 신설)

상속권 상실에 관한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혹은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

죄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신고(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1대 국회 정부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권 상실 신고의 적용 범위를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도 포함하였으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있는가?

김 상 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대법원 재판예규는 유아 인도명령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이 예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도 원칙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의 안전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된다.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예외 없이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유아가 현재의 거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도 강제력을 사용하여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의 복리가 회복불가능하

게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재판예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아의 연령대(유아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를 벗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6세를 넘은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명령 및 그 집행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직접강제는 처음부터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나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어느 아동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사교집단에서 거주하는 경우) - 그것이 설령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 직접강제의 방식을 통해서 법원의 인도명령을 관철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유아 인도명령의 집행에 관한 현행 대법원 예규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개정 2003. 9. 17. [재판예규 제917-2호, 시행 2003. 10. 1.]

II. 국내에서의 논의와 관련 법령의 현황

1.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금지

자녀의 친권자(이혼 등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양육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자에 대해서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는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의해서 “유아의 인도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사소송법이 “자녀의 인도” 대신 훨씬 범위가 좁은 “유아의 인도”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다. 자녀의 인도청구권은 친권(양육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 대상을 미성년자녀가 아닌 유아로 제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실무제요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인도청구의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비교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자녀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유아의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²⁾

이러한 설명은 부모의 이혼 후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사교(邪敎)집단이나 범죄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

에서 거주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본다면, 위와 같은 설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자녀를 복리를 회복불가능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예견되는 때에도 자녀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자녀 인도심판의 집행을 쉽사리 포기한다면, 이는 재판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에 부여된 자녀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2.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규정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 가능

한편 가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³⁾은 제145조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의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 “유아 인도” 대신 “미성년 자녀의 인도”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⁴⁾

개정안 제145조 제5항은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인도집행에 있어서 직접강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현행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와 같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빠진 것이 단순한 누락인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배제한 것인지에 따라 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초안은 2014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

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494면.

3) 21대 국회에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1대 국회의 회기종료로 폐기되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초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직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마련되었으며,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가 이 초안(대법원 건의안)을 토대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확정하였다.

4) 유아 대신 미성년자녀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록 II, 2015, 1832면 이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385면 이하.

회 제24차 회의(2014. 8. 8.)에서 마련되었는데,⁵⁾ 그날 위원회는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의 강제집행’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인도집행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재판예규와 같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예규의 단서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표결에 의하여 두 번째 의견이 채택되었다.⁶⁾ 두 번째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녀의 의사만으로 재판의 집행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보다 큰 틀에서 그 집행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제집행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의사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거부하는 때에도 인도명령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의 제정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최근에 대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⁷⁾를 제정하였는데,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제2항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아동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이하 “현행 예규”라고 함)를 두고 있으나, 현행 예규는 1982. 6. 7. 제정 당시부터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바,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복리적 관점에서 아동 인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마련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⁸⁾

위 예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⁹⁾

5)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록 II, 2015, 1826면 이하 참조.

6)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록 II, 2015, 1864-1866면. 1인의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하였음.

7) 재판예규 제1869호. 제정 2024. 1. 10. 시행 2024. 4. 1.

8) 최근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를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한 바 있는데(JTBC 2023. 5. 3. 보도.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 이것이 새로운 예규 제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9) 2023년 12월 7일 법원행정처에서 입법 예고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정안 제4조 제4항에는 “집행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정된 예규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장준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 법률신문 1월 18일자 참조

위 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의사능력 있는 자녀가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는 이원화되었다. 국내사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가 적용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될 것이다. 반면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는 더 이상 이 예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⁰⁾

III. 독일 판례의 경향과 입법적 해결

1.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독일 법원의 태도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녀의 인도집행에 있어서 자녀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이 이어져 왔다.¹¹⁾ 이 문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다.

1975년 독일연방대법원¹²⁾은 자녀가 14세에 이른 경우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은 기본법 제2조¹³⁾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1977년에 독일연방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긴급한 개입이 요청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람의 인도 청구의 집행은,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집행을 지체하면 인도의 대상인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한 실사가 요구된다. 특히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의 이익과 인격에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우선 자녀의 인도의무자(예컨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일방)와 자녀의 의견을 듣고, 경고를 통하여 인도에 응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인도집행을 지체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태도는 그 후 하급심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1985년에 바이에른주 최고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15세에 이른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¹⁵⁾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M은 외국인 노동자로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거주하던 터키인 부모 사이에서 1969년 5월 11일에 태어났다. 둘

1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은 아동의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제1호),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제3호),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제4호)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아동의 반환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6), 96면 이하, 112면 이하 참조). 따라서, 예를 들어,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때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의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1) 2009년에 제정된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이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논쟁은 종결되었다

12) BGH, FamRZ 1975, 273, 275.

13) 독일기본법 제2조(자유권) ① 누구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적 질서와 도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라도 생명과 신체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는 다만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14) BGH, FamRZ 1977, 126, 128.

15) BayObLG, FamRZ 1985, 737ff.

다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M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웠던 M의 부모는 M의 양육을 독일인 부부 가정에 위탁하였으며(당시 M은 생후 7개월 15일이었다), 주말에만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갔다. M의 부모는 1975년 10월에 터키(현재의 튀르키예)로 돌아가면서 M을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 독일어만 사용했던 M은 터키어를 새로 익히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M의 위탁부모는 1년에 한두 번 터키로 M을 방문하였고, M은 1년에 여러 차례 독일로 위탁부모를 방문하였다. 1982년 7월 M의 어머니는 M과 함께 1개월간 독일의 위탁부모를 방문하였다. M의 어머니가 M과 함께 터키로 돌아가려 하자 M은 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를 믿은 M의 어머니는 M을 위탁부모에게 맡겨두고 돌아갔다. M의 위탁부모는 M을 돌려보내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M의 부모가 더 이상의 독일 체류를 반대하며 M에게 터키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자, 그 지역의 아동청은 1983년 9월 뷔르츠부르크 후견법원에 임시처분으로 M의 부모의 거소지정권을 상실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1984년 4월 13일 후견법원은 아동청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M의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탁부모에 대해서 M의 인도를 명하였다. M과 아동청은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M은 터키에 있는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였다. M은 1984년 6월 4일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위탁부모와 함께 살면서 독일의 중등학교(Hauptschule)에 8학년으로 편입하였다. 1984년 10월 30일 M의 부모는 뷔르츠부르크 후견법원에 강제력을 사용하여 M의 인도를 집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1984년 11월 7일 뷔르츠부르크 후견법원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M(당시 15세)을 부모에게 인도하라는 심판을 하였다(법원은 M이 그간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에 앞서 M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1984년 11월 9일 집행관은 법원의 인도명령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M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자살하겠다고 위협하여 실패하였다. M이 항고하자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은 M의

자살 위협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을 의뢰받은 정신과의사 G교수는 M을 강제로 인도하려고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984년 12월 6일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은 M이 입원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에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M은 즉시항고를 하였다.」

바이에른주 최고법원¹⁶⁾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직접강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독일민법 제1627조),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M을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모의 인도 청구는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 부모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거소지정권(독일민법 제1631조 제1항)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나오는 자녀의 기본권(인격권)¹⁷⁾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자녀가 현재 방임 상태(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면,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녀가 현재 위탁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강제력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은 자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우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단지 독일민법 제1632조에 따른 부모의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간의 불가침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이다.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의 판단은 비례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이란 선택한 수단과 실현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인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판의 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녀의 인도 명령이 자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미 비례의 원칙을 결여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해당 자녀의

16) 당시 바이에른주 최고법원(Bayerisches Oberstes Landesgericht)은 비송사건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였다.

17) 재판부는 당시 15세 6개월인 M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성년이 될 때까지 아직 2년 6개월이 남아 있었다), 이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기본권행사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생명은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보다 더 중요하다. 뷔르츠 부르크 지방법원은 정신과 입원치료를 통해서 자살의 위험에 대처하려고 하였지만, 자살의 위험은 강제치료에 있어서 실시될 예정인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입원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녀인도의 강제집행에 대한 독일 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는 인도집행을 지체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면,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자녀가 현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강제력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2.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정에 따른 입법적 해결

(1)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규정의 도입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90조 제2항 1문은 구 독일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2문과 마찬가지로 면접교

섭의 실행을 목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직접강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¹⁸⁾ 그러나 동법 제90조 제2항 2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이외의 경우(면접교섭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¹⁹⁾에는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자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는 그때까지의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2) 자녀에 대한 강제집행과 자녀의 복리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는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90조 제2항 2문). 예를 들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환경(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집단에서 합숙하는 경우)로부터 자녀를 분리,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강제집행은 - 설령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라고 해도 -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²⁰⁾ 그러나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²¹⁾ 요컨대 인도에 반대하는 자녀의 의사와 현재의 거소에서 계속 거주할 때 자녀의 복리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즉 인도를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자녀가 현재의 거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²²⁾

자녀의 복리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기준은 인도를 거

18) 면접교섭의 실행을 위하여 부모에 대해서 직접강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면접교섭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면접교섭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부모간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Johannsen/Henrich/Althammer/Dürbeck, 7. Aufl. 2020, FamFG § 90 Rn. 2.

19)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이혼 등을 계기로 친권(또는 거소지정권)이 부모 중 일방에게 귀속된 후에 자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671조),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아서 독일민법 제1632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독일민법 제1666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여 선임된 후견인이 아동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20) Völker, Vollstreckung einer Entscheidung zur Herausgabe von Personen und zur Regelung des Umgangs, §§ 88 ff. FamFG, FPR 2012, 489.

21) BayObLG, NJW 1974, 2184; Haußleiter/Gomille, 2. Aufl. 2017, FamFG § 90 Rn. 4.

22) Saenger, Zivilprozessordnung, 10. Aufl. 2023, FamFG § 90 Rn. 6.

부하는 자녀의 연령이다.²³⁾ 자녀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기본권행사능력).²⁴⁾ 스스로 의사를 형성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고려되지만, 연령이 높아지고 판단력이 향상될수록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²⁵⁾ 일반적으로 14세의 자녀를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²⁶⁾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제력을 사용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²⁷⁾

(3) 비례의 원칙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는 다른 온건한 수단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90조 제2항 2문). 이에 따라 법원은 다른 온건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온건한 수단의 사용이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직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²⁸⁾ 따라서 인도의무자에게 우선 질서금(Ordnungsgeld) 부과, 질서구금(Ordnungshaft)²⁹⁾ 명령 등의 조치³⁰⁾를 취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직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차례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³¹⁾ 즉 약한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조치로써 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집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예를 들어, 자녀가 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³²⁾ 여아에게 할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³³⁾ 자녀가 강제혼인을 앞둔 경우 등)에는 질서금의 부과 등과 같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곧바로 직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³⁴⁾

가정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에 앞서 우선 인도의무자 및 권리자,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가정법원 판사는 이러한 대화에 아동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 아동청은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위험한 장소에서 끌어내어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독일사회법 제8편 제42조),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폭력적인 충돌 없이 아동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⁵⁾

(4)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의 실시

자녀의 인도집행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실시되어야 한다. 집행기관은 법원의 집행관이다. 직접강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인도의무자(예를 들어 부모의 일방 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제3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채무자라고 한다)

23) BT-Drucks. 16/6308, S. 483.

24) BVerfG, FamRZ 2008, 1737. 11세에 이른 자녀에게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였다; AG Springe NJW 1978, 834. 10세; OLG Hamm DAVorm 1975, 168. 8세.

25) BVerfG, FamRZ 2007, 1878.

26) BGH, FamRZ 1975, 276; Giers, Die Vollstreckung familienrechtlicher Entscheidungen nach dem FamFG, FPR 2006, 441.

27) Sternal/Giers, 21. Aufl. 2023, FamFG § 90 Rn. 11.

28) BT-Drucks. 16/6308, S. 218.

29) 'Ordnungsgeld'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질서금으로, 'Ordnungshaft'는 질서구금으로 번역되고 있다(호문혁, "독일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4호, 2001, 137면). 다만 법무부에서 출간한 민사소송법 번역집(독일)에는 'Ordnungsgeld'와 'Ordnungshaft'가 각각 과태료와 감치로 번역되어 있다(제890조 부분 참조).

30)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31) MüKoFamFG/Zimmermann, 3. Aufl. 2018, FamFG § 90 Rn. 7.

32) Musielak/Borth/Frank/Frank, 7. Aufl. 2022, FamFG § 90 Rn. 4.

33) BGH, NJW 2005, 672.

34)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3호(재판의 즉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5) BT-Drucks. 16/6308, S. 218.

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2문).

집행관은 인도권리자(예컨대 친권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채권자라고 한다)가 자녀를 현장에서 곧바로 넘겨받는 경우에만 집행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한다(법원집행관을 위한 업무지침³⁶⁾ 제156조 제4항). 집행관이 저항하는 자녀를 붙잡아서 인도권리자에게 데려다주는 방식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즉 인도권리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³⁷⁾ 아동청은 집행기관은 될 수 없으나, 법원이나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³⁸⁾ 법원은 집행관에게 가옥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며(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원집행관을 위한 업무지침 제156조 제3항,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7조 제3항 1문).

IV. 맺음말

법원이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하였으나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 있다. 이 문제에는 부모의 친권,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부모는 친권자(양육자)로서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거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한다면 친권자는 스스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법원에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한 거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친권의 실현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를 통해서 자녀의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친권행사는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녀가 그 대상이므로, 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력을 사용하여 친권자가 지정한 거소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해결책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인정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는 결국 그 집행이 자녀의 복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현재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이혼 시 부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자녀가 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부에게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무리하게 친권자에게 인도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 친권 내지 양육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 - 친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이다 - 에도 반하는 것이다.

36) GVGA: Geschäftsweisung für Gerichtsvollzieher(법원집행관을 위한 업무지침).

37) MüKoFamFG/Zimmermann, 3. Aufl. 2018, FamFG § 90 Rn. 18.

38) 가정법원 판사는 자녀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아동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 아동청의 지원을 통하여 굳이 집행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거나, 집행관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BT-Drucks. 16/6308, S. 481.

김상용 교수, 김주수 ·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가족법-」 제20판 출간

선친 김주수 교수의

「친족상속법-가족법」 첫 출간 60주년 맞아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본소 이사,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는 선친인 고 김주수 교수와 공저로 「친족·상속법-가족법-」 제20판(발행 도서출판 법문사)을 출간하였다. 위 저서는

김주수 교수가 1964년 2월에 「친족상속법-가족법」(발행 법문사)을 첫 출간한 이래 올해 출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된 것이다.

김주수 교수는 1957년 당시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식민법학적인 이론에 맞서서 “헌법상상의 가족제도의 존속가치-민법초안의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 논문을 발표한 이래 전통적 가족제도의 존속가치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이론적 기저로 수많은 논문과 저서 집필, 후학양성, 각종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우리나라 가족법학의 이론적, 실용적 기틀을 세웠다. 가족법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주수 교수의 뒤를 이어 김상용 교수 역시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과 가족법의 명확한 이론 체계구축을 위해 열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가족법연구와 법학교육에 매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 김주수 ·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가족법-」을 매

년 발간해 오고 있다. 김상용 교수는 또한 가족법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가족복리를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에 중점을 두고 김주수 교수의 대를 이어 그동안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운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가족법개정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김주수 교수의 「친족상속법-가족법-」은 가족법연구의 집대성으로 출간 초기부터 독보적 위치를 점해 왔으며, 많은 가족법 관련 저서들이 출간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족법 연구와 법학교육의 필수적 교재로 훌륭하고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김상용 교수는 이처럼 상담소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출간된 “김주수 ·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가족법-」 제20판” 20권을 본소에 증정하였다.

상담소는 김상용 교수가 증정한 이 저서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여, 내담자들은 물론 법률구조 사업 전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이와 눈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는 시간

〈 캠프일정표 〉

	8/22(목)				8/23(금)			8/24(토)	
07:00~08:00	이동 및 도착				아 침 (07:30~08:30)			해변산책 및 자유시간	
08:00~09:00					휴 식				
09:00~10:00					주거 교육	신나는 음악놀이 -유아 프로그램	공방 체험 -나만의 수납장 만들기 (유치, 어린이 프로그램)	놀다보니 친해지고 유식해지네 -청소년 프로그램	폐회
10:00~11:00									
11:00~12:00									
12:00~13:00	오리엔테이션				점 심			점 심	
13:00~14:00	점 심				경포 아쿠아리움 탐방			귀 가	
14:00~15:00	동해 약천온천수영장 체험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 녁				저 녁				
19:00~20:00	가족법 교육	애들아 놀자 (어린이, 청소년)	클레이 만들기 (유치)	클레이 만들기 (유아)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 가족 레크리에이션	오감발달놀이 -영아 프로그램	신나는 체육놀이 -유아프로그램		
20:00~21:00	상 담	휴 식							



- 일 시 : 2024년 8월 22일(목) ~ 8월24일(토)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37명, 자녀 42명,
조은경, 김지은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현관 차장, 엄윤화 주임(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릉지사)
노재광 (AHA교육컨설팅 대표),
이혜린, 김영미, 공영배, 양진영
(제이원 키즈 스포츠), 이태연(떠니씨니) 강사
애란한가족 네트워크 직원 10명 등 총 98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

2009년 비혼모캠프로 시작한 비혼모가정위크숍이 올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가족 행복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비혼모 37가정이 참여했으며, 비혼모가정에 꼭 필요한 양육과 관련한 가족법교육과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교육이 있었다. 강의 이후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성과 본 변경, 입양, 파산면책 등에 대한 가정법률상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고 어려웠던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소통·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맞춘 '애들아 놀자', '클레이 음식만들기', '나만의 수납장 만들기', '신나는 체육놀이', '오감 발달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해약천온천 야외수영장과 경포 아쿠아리움 등에서 체험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엄마들은 자녀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에서 비혼모들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양육비판결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 불안정한 주거문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의 부담, 인지(양육비,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청구,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늘어난 채무관련 법률문제와 비혼모시설 퇴소 후의 자립준비(주거, 생활 등)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가족여행, 가족체험, 돌봄시설과 아이돌봄지원확대, 자녀교육지원, 한부모지원 (수급비, 일자리지원, 취업, 자격증취득, 학원비, 진로체험), 임대정보,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과 무료소송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9년 시작된 비혼모 워크숍이 벌써 16년이 되었다. 한 프로그램을 16년이나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혼모 워크숍을 통해서 만난 아기들은 어느덧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었고, 20대에 만난 아기엄마는 이제는 40대가 되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전과 비교하면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비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들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그동안 비혼모 가정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 왔던 것 상담소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글쓴이 : 노OO

2박 3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 군데 여행도 다니면서 아이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넓고 따뜻한 풀장에서 아이와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저녁의 가족법률 강의도 너무 유익했다. 양육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청구를 열심히 해야됨을 깨닫는 너무 소중한 시작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소중한 눈부신 맑은 날 솔향 나는 아침이었다. 둘째 날은 소중한 내 집에 대한 주거교육을 받고 점심 식사 후 경포 아쿠아리움에 갔다. 다양한 물고기를 보며 밥도 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에 남겼다. 돌아와서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에 정말 즐거웠다. 다양한 게임을 하며 다른 가족들과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협동심을 발휘해 친해질 수 있었다. 과일과 치킨, 피자 등 맛있는 간식이 많아 정말 좋았다. 2박 3일 동안 잊지 못할 정말 즐거운 아이와 엄마들과의 추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아쉽다.

글쓴이 : 박OO

올해 여름방학 동안 감기로 내내 고생하던 딸아이는 제대로 물놀이 한 번을 못 갔습니다. 우리가족 행복캠프만을 손꼽아 기다린 나날들로 설레임 가득 안고 찾아왔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캠프를 참여했던 저와 딸아이에게 캠프는 너무나도 신세계였습니다.

맛있는 밥도 주시고 알차게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고 차로 이동도 시켜주시고 저녁마다 간식에, 진짜 최고가 아닐 수가 없네요. 매일 아이들 밥에 간식 챙겨주느라 애썼던 엄마들이 매끼 끼니 걱정 없이 누군가 해주는 식사를 한다는게 더없는 힐링의 시간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엄마도 아이들

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최고입니다. 늘 많은 한부모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주시니 이런 배려를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깊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끌어 주신 열정과 노력 잊지 않고 좀 더 잘 살아가려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 최선을 다해 키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

글쓴이 : 이OO

작년 여름 발바닥 수술로 일도 쉬고, 많이 아프고, 올해 이렇게 캠프에 △△와 함께 와 있다는 게 정말 우와~! 신나요!! 신납니다. 항상 이렇게 캠프를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멋진 추억 만들고 갑니다~

30살 되던 해 1월에 애란원에 들어와 벌써 제가 48살이 되었습니다. 곧 반백살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원 선생님들과 함께 키웠어요. 아들은 벌써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대학 진학 고민을 하고 이젠 언제부턴가 아이를 세상으로 독립시키려고 준비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세상 밖에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 모두에게 배우고, 경험한 일들이 많을 테니까요~. 아이를 지켜보면서 가끔!! 난 벌써 내 인생의 2/3를 살아온 것 같아서 앞으로 내가 나의 나머지 삶을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기에 이제 후회는 없어요. 더 파이팅!! 우리 △△이도 파이팅! 하길 바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김OO

올해도 친정가족 나들이 느낌의 캠프를 중2병에 걸린 아들과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캠프였습니다. 서강대 공영 주차장에서 만난 반가운 선생님들과 엄마, 아가들, 버스 안에서 저번 상담 내용과 몸상태를 기억해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셨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까지 넘 감동이었어요!! 이번 캠프에서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동생들을 만

날 기회가 많았고 프로그램 시간이 여유 있어 아이와 대화할 시간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중2 아들에게 큰오빠~ 큰오빠~ 하며 따르고 필요하다던 동생들 덕분에 아이도 돌봄과 나눔을 배워가는 캠프였고 저 역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야겠다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알차고 즐거웠던 캠프였습니다.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글쓴이 : 박OO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한가족네트워크는 저의 삶에 대한 변화를 시작으로 한부모라는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한부모를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한가족네트워크가 한부모들에게 사회활동 지원, 생활 유지, 심리적, 재정적 지지 등을 아낌없이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라는 편견을 변화시키고 한부모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삶에는 '마침표가 쉼표'가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탓에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 모든 것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한가족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으며 저의 현재 생활에 쉼표(.)를 찍으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우리가족행복캠프'가 1년 중 저의 애들이 제일로 기대하는 가족행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매년 즐거운 여행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애란한가족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한부모들이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며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나의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한가족네트워크와 '우리가족행복캠프'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까지 힘써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황OO

아픈 엄마를 대신해 ㅁㅁ할머니로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한 캠프다. 아파도 없이 여행 한 번 제대로 같이 못해 항상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ㅁㅁ는 얼마나 어린 마음에 한쪽에 상처로 남아 있을까? 다시 한번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ㅁㅁ를 채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반성을 하게 된다. 힘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좋은 환경(자연과 바다)을 보면서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에 우리 ㅁㅁ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게, 씩씩하게, 밝은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다. 마구 뛰어노는 바닷가에서 ㅁㅁ의 허전함 다 쏟아버리고 가겠지? 존경하는 선생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쓴이 : 장OO

안녕하세요, 저는 10세 아들과 함께 온 엄마입니다.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2024년 우리가족행복캠프 입성에 감개무량합니다. 아이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골절되어 급속고정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었으나, 아이도 저도 이곳 캠프에 함께 하고픈 설렘에 어제 아침에 퇴원수속 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매 식단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하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약천수영장에서 밀고 끌기를 2시간 반복하며 엄마 너무 행복하다며 표현하는 아이를 보니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경포 아쿠아리움의 수달, 펭귄, 거북이 먹이 체험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법률강의를 통해 그동안 정말 궁금해하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교육 후 가진 법률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교육시간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다같이 동글게 앉아 재미난 게임을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치킨, 과일, 피자 간식도 너무 맛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쓴이 : 김OO

아기와 처음으로 간 여행이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도 많고 유익한 교육도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기와 더 친해지고 서로의 애착형성도 잘 되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기회를 주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도 친구들과 잘 놀고 행복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2박 3일로 끝나서 조금 아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기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획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 2박 3일 고생하셨습니다.

글쓴이 : 김OO

매년은 아니지만 옥계 가족캠프에 올 때마다 정말 좋아요. 지치고 힘든 일상속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하고 갑니다. 집에 있으면 아이와 말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아이는 핸드폰, 저는 티비에 빠져서 대화가 단절되는데 여기 오니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도 하여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캠프를 계기로 다시 다짐해 봅니다. 하나뿐인 우리 아들 사랑으로 키우고 대화도 잘 나누는 다정한 엄마가 되자! 항상 감사한 마음 갖자! 라고 말입니다.

글쓴이 : 정OO

작년에 아이가 너무 어려 캠프에 참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엄청 많은 줄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으니 엄청 많기도 하고 새로웠어요. 한부모 인식과 시선이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이 곁에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와 그동안은 집 안이나 집 근처에만 갔는데, 멀리 강원도에서 2박 3일 동안 자고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노을을 보는 것에 설됩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니 볼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아이가 어려서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수영장 갔을 때, OO이가 물을 좋아해서 해맑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캠프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서 신나게 놀고 활동적인 아이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을 잘 안 나가게 되니까 방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나오고 싶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 경포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아이가 좋아해줘서 좋았습니다. OO이랑 함께 올 수 있어서 좋았고 모든 분이 OO이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다도 계속 보고, 아무 생각이 안들게 즐거웠던 나날들인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요~ 캠프에 와서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2박 3일 동안 힐링만 하고 가는 기분이라 좋습니다.

글쓴이 : 박OO

늘 내 손을 통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던 일상과

달리 버스에 타서 눈 감았다가 뜨니 푸르고 예쁜 바다가 보이니 기대와 즐거움이 벌써 샘솟았던 첫날. 손이 많이 가는 아이와의 여행도 좀 더 고되고 좀 더 피곤하지만 활짝 웃는 모습에 좀 더 행복하곤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아이는 부쩍 태연하게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불을 깔고 씻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고 정리하고 옷도 챙기고 머리도 영성하지만 혼자 묶었더라고요. 엄마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던 아이가 우리가족행복캠프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행복해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평평 울었다고 해요. 친구들과 마음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물어주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잘 자랐구나! 감동이 가슴에 밀려드니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구나 우리 딸. 아이와 친해지고 위로와 위안이 되는 캠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 김OO

3일 간의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많은 감사 드립니다. 정말 여유롭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출할 틈이 없도록 중간 중간 챙겨주시는 간식들도 정성과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감사를 느꼈어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저는 너무 즐거웠네요. 엄마들은 이런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많지 않기에 더 재밌었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케어해주시고,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이들과 성인 모두 신경 써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문OO

안녕하세요, 우리가족행복캠프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옥계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멋진 바다와 솔밭이 그리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캠프에 선정되어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 좋은 날씨로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좋은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손길들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리를 다쳐 올해는 유난히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중한 힐링과 추억과 경험을 쌓고 갑니다. 일상에서 무미건조하고 활력을 잃어버린 엄마에게, 나 자신에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올해 남은 기간들과 어렵פות한 계획들을 잠시나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 그대로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가정법률상담과 주거 정보와 상담까지 어느 하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알찬 프로그램도 신경 써 진행되는 거 보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행복한 캠프~. 잘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이OO

처음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캠프를 간다고 공지를 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때 갔던 수련원이 생각나 큰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수련원에 도착해보니 바닷가가 보이는 콘도같은 숙소라 많이 놀랐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간 동해 약천 온천 수영장도 영유아풀과 깊이가 있는 풀이 세심하게 나누어 있어 좋았고, 워터파크처럼 붐비지 않아서 아이와 여유 있게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짐을 가지고 숙소로 올라오니 창밖으로 바다 뷰가 펼쳐져 너무 예뻐고 숙소도 4인이 쓰기에 충분히 넓고 깨끗해서 2박 3일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 있어 클레이를 만들기도 하고 에어바운스와 실내 바이킹도 타며 2시간 신나게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니 캠프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정 중간 중간 간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쿠아리움 체험 후 인형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금전적인 걱정 없이 아이와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잘 챙겨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지원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쓴이 : 이OO

캠프를 앞두고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여름이면 아이도 저도 가장 기다리던 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가족행복캠프'인데 행여나 못 오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되었어요. 오기 전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아팠나 싶게 컨디션이 급상승했고 출발하던 그 아침 사람들 많은 전철 안에서 콧노래를 불러대는 아이를 진정시키느라 혼났습니다. 아이도 들뜬 마음을 저처럼 주체하기 힘들었나봐요. 그거 아시죠? 방학이 엄마들에겐 더 힘들 때라는 거요, 일은 일대로 계속하는 데 아이 밀린 공부도 시켜야 하고 삼시세끼 밥도 해줘야 하는 육퇴 없는 기간이거든요.

여기 와서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며 청소, 설거지 걱정할 필요

없고, 아이들은 또래끼리 어울리며 어찌나 바쁘게 놀던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사소한 일인데도 아이에게 쉽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에 치여서 그동안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쫓기듯 지내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 곁에서 아이는 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어제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 화내지 않고 친절히 말하는 엄마가 되겠다며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사랑한다고 캠프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 최고라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살았을 것들,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아이랑 함께 맘껏 웃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캠프를 준비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홍OO

안녕하세요. 귀한 여름캠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참가한 캠프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 반 세 근 반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엄마인 제가 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버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흥얼 하면서 아이랑 가위바위보도 하며 즐겁게 도착하며 맛있는 점심도 먹으며 행복한 하루 첫째 날을 보내며 시원한 수영장에서 아이랑 추억을 쌓았습니다. 첫날 만끽한 애들아 놀자 레크리에이션 덕분에 스피드와 협동력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교육을 통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양육비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주신 치킨과 함께 아이와 성장 스토리 답소를 나누며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푸른 바다와 밝은 햇살을 보며 산책도 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고 아이는 수납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자기가 만든 수납장에 대장장이가 된 것 같다며 연신 뿌듯해하며 자기만의 보물을 담아서 간직하겠다고 하며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인 저는 제일 필요한 주거교육을 받으며 여러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다른 주거형태와 다양한 입주조건을 알게

되어 마음의 짐을 덜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경포 아쿠아리움을 가면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물고기와 동물들을 보며 귀한 체험학습 시간이 되었으며 저녁에 진행한 가족 레크레이션 시간은 유쾌하고 신나는 강사님의 유티 있는 진행 덕분에 아이와 가족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협응력과 스피드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일주일 캠프를 하는 듯한 2박 3일의 알찬 캠프 시간이 벌써 마무리 된다고 하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과 온정으로 한부모가정을 위해 희망등대지기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잊지 못할 2024년 여름캠프가 되었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가슴 속에 한아름 추억을 가득 담고 일 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윤OO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2024년 우리가족행복캠프>에 사춘기 아이와 참여하며 2박 3일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속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원, 그리고 삼성생명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막막했던 제게 이 사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애란원은 저에게 친정 같은 푸근함을 주는 안식처예요. 그런 애란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추억을 쌓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도 중3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능률한 아이로 성장했네요. 엄마 같은 푸근함을 주는 곳이 애란원이라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을 주는 곳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가정법률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든든한 백이 언제나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이와 함께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 이번 캠프는 좀 더 의의가 깊네요. 이곳에 와서 어린 아가들을 보며 예전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았고, 옛 추억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와 함께 해줄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가봐요. 이곳에서의 활동이 아이에게도 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인지,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는 말을 하네요.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2박 3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니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신나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던 시간이었

습니다. 소중한 시간, 추억을 만든 만큼, 현실로 돌아가 힘을 내 다시 열심히 살아갈게요. 힘들고 지칠 때 살면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곳에 늘 애란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어 엄마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소감문을 빌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글쓴이 : 조OO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2024년 우리가족 행복캠프에 참여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다 보니 이제 여름이 오면 <우리가족 행복캠프>가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캠프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가는 거라고 알려주니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 했는데 잘 일어나서 먼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60cm 풀에서 놀던 때가 옛 그제 같은데 이제 110cm에서 노는 걸 보니 어린 시절 아이의 시간은 일 년에 두 배만큼 마음이 크고 몸도 크고 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국여성수련원이 익숙해졌는지 바다를 보러 가자 하고 식당 가는 길도 앞장섭니다. 작년에도 느꼈지만 정말 해마다 기쁘게 찾고 반갑게 맞이하시니 친정 같은 기분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정말 남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케어해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도 많으셔서 마음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못하던 것, 늘 실천이 어렵던 것들 캠프에 오면 노력해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받는 "육아스트레스"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은 2명 뭉치 1명에게 가니 어찌면 내심 "나는 2배로 힘들게 육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캠프를 보내고 있으며 "아~ 나는 2배의 기쁨,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라구요. 우리는 2배 힘든만큼 2배 행복한 한부모가족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2박 3일인 것 같습니다.

법교육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 양육비 청구 의사가 없었습니다. 친부의 경제적 능력도 의문이였어요. 그런데 매년 법률 교육과 옆 사람의 생생한 현장 상담을 듣다 보니 '내가 힘든 길 같아 그냥 회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고 양육비 청구권의 청구인은 '아이가 아닐까?', 그럼 내가 아이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 움직이기 힘든 사람, 생각 바꾸기 어려운 사람, 행동에 소심한 사람, 돌다리도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다 부서질 때 "거봐 안 건너길 잘했어.

위험했어.” 하는 저란 졸보에게 용기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선악이 있고, 세상이 악으로 물들지 않는 것은 “신이 선의 편인가봐”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선의 편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우리가족행복캠프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의지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글쓴이 : 임OO

“휴가 안가? 친구들은 제주도로 가고 베트남도 갔다 왔다.” “우리는 강원도 옥계로 휴가 갈거야?” “아, 밥도 맛있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형아들도 만날 수 있는 곳. 작년에도 갔던 곳이지?”. OO이는 작년에 다녀온 옥계캠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 밤 자고 금요일. 이른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솔밭 숲 한국여성수련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넓은 바다가 보이고 월풀욕조에 깨끗한 내부를 보고 OO이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첫날은 옥계 캠프를 위해 구입한 스노우쿨링을 착용해볼 수 있는 약천온천 수영장에 도착하여 워터슬라이드도 타보고 큰 악어 튜브에 올라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서머했던 형, 동생들과 친해졌습니다. 이튿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사회자가 ‘만만해 보이는 두 분을 만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OO이는 엄마인 저를 찾았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하자 OO이는 엄마가 왜 만만해 보이냐면은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엄마가 이겨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엄마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 OO이의 만만해 보인다는 사람의 뜻은 가장 편하고 든든하고 너의 편이 되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뜻이지?’. 그동안은 아이와 함께 있어도 놀이하며 즐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서로의 일들을 하기 바쁘고 같이 논다기 보다는 챙겨주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우리가족행복 캠프는 콘크리트 속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신나게 놀 수 있고 육아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는 식사가 기다려지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2박 3일 동안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거리는 버리고 남은 2024년을 잘 보낼 파도처럼 힘차고 솔밭 숲의 따뜻한 힐링 에너지로 채워갑니다. 캠프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인가족네트워크에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백OO

안녕하세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족행복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둔 일주일 전부터 일도 못하고 링거를 맞아야 될 만큼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에 날씨가 비 예보로 이번 캠프는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에 솜사탕을 흩어놓은 듯 한 구름이 눈에 들어오고 녹음이 짙은 산 능선을 보고 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과 우려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휴게소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와 버스 안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이번 행복캠프에 참여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수련원이 가까워지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온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전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수영장에서는 넓은 풀장에 슬라이드 시설과 알록달록 튜브를 본 아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풀장은 에메랄드 보석처럼 반짝였고 눈부시게 빛나는 수면을 바라보며 아주 잠시 딴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수영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수련원에 돌아와 배불리 저녁을 먹고 이후 진행된 법률 교육은 상식과 정보를 넘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고단한 한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힘든 엄마들의 고민 해결사였습니다. 격한 물놀이 후유증으로 근육통이 생겼지만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맛있게 먹은 치킨 덕분에 퉁퉁 부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또래 언니들과 어울려 놀기에 바빴고 저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엄마들과 수다타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LH주거복지 관련 교육은 꼼꼼한 안내와 진행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아이는 수납장을 만들어와 자랑하듯 보여주며 좋아했고 저녁에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열심히 게임에 참여해 간식을 상으로 받는 등 아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맛있는 피자도 둘째 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원 선생님들께서 애쓰신 덕분에 엄마와 아이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며 원인조차 모르는 병마와 싸우다 보니 심신이 지친 저에게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마련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동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7)

제 5 강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INTRODUCTION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트라우마의 증상, 트라우마의 요인, 종류 등을 알아보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인 PTSD를 자세히 알아보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POINT

1. 서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의 해마 부위다. 해마는 정보를 기억한다. 사람에게 중요한 나이가 10살인데 그 이전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그때 이후의 기억이 해마에 저장된다. 평소에 생각나지 않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린 시절의 기억도 살아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10살을 전후해서 대뇌피질로 다 분산된다. 아주 큰 스

트레스나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해마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억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기억 상실증이나 해리장애, 원래 자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는 것이다. 해마와 편도체 부위는 망치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 그러나 심리적 상처는 이 단단한 부위들을 손상시켜 기억과 감정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2. 본론

트라우마는 다른 말로 일종의 상실이다. 나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나만큼 소중하거나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상실감이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겐 부모가 절대적 존재이다. 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아이에게 그 상실감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온다. 일례로, 스웨덴에 한국 아이들이 매우 많이 입양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자기 부모가 자신을 버렸고(애착 트라우마), 이에 자신이 입양되어 멀리 타국에 와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야 했다(아동기의 부정적 경험)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트라우마가 되면서 견디기 힘들어 자살에 이른다. 즉 상실감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웬만한 우울감은 치유가 된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된 상처나 우울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트라우마의 속성은 세 가지다.

첫째, 사후성이다. 상실의 충격을 겪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충격이기에 정작 본인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지고, 뒤늦게 지연된 형태의 충격이 올라온다. 그 충격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상처, 고통을 소급해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온 충격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결합하면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둘째, 무지의 구름과 같은 모호성이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머리로 아프고 마음도 좋지 않고 매우 힘들다. 기분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모호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알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우울감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역전성이다. 과거는 예전 일이기 때문에 모호하고 어렵듯하지만, 현재는 생생하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은 과거가 더 생생하다. 즉 과거와 현재의 역전이 일어난다. 더 심각해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10~20년이 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차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간 외적인 외상(Impersonal Trauma)이다. 이는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큰 트라우마이다.

둘째, 대인 관계적 외상(Interpersonal Trauma)이다. 타인에 의해 고의로 발생하는 트라우마이다. 월남전에 참전해 자기 전우가 사망하고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전쟁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심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예기치 못한 폭력,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후유증,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애착 외상(Attachment Trauma)이다. 아동기에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강력한 대인 관계적 요인들이 결합

한 경우이다.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가족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아주 심한 심리적 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트라우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트라우마를 발생시킨 사건[Event]이다. 이 사건들은 대체로 폭력 혹은 상실 경험이다. 둘째, 트라우마 경험의 내용[Experience]이다.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더 크다, 그리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정신적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트라우마의 효과[Effect]이다.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하나의 요소이다. 외상 사건에는 심리적 학대, 자동차 사고, 성폭행, 범죄피해, 자녀의 사망, 살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각자 외상을 겪는 사건이 모두 다르다. 또한 같은 사건이더라도 누구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의 뇌에서 사랑과 미움을 느끼는 뇌 회로가 같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언젠가 그 사람을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고, 기대를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 관심과 기대가 좌절되면서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참 묘해서 모순된 것들이 결합하여 있다. 뇌에서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도 같은 회로라서 과거가 부정적이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 있으면 장래도 밝게 전망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기부터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나면 평생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계속 심리적으로 마음을 꿰뚫어 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 혹은 방임,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 폭력, 가족 내 폭력, 부모의 자살이나 비참한 죽음에의 노출 등은 매우 충격적인 상처가 되어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안전한 느낌, 안정감, 친밀감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 법적 문제가 생겨 수감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을 드러냈거나,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타인에게 맡겨지거나 하는 경우 등 모두 아이의 트라우마가 된다. 아동기의 트라우마 사건은 성인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도 관련된다. 성장 후 교육이나 직업을 갖는 기회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적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도 궁극적으로는 일찍 사망(early death)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혹은 질병과 장애,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트라우마의 종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PTSD이다.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우선 기분이 우울하다. 생각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뇌가 망가지면 생각하는 폭이 매우 협소해진다. 소리나 외부자극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뇌에 놀람 반응을 보이는 알람 기능을 하는 센서가 고장나서 사소한 소음이나 자극에도 깜짝 깜짝 놀라거나 과자극되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PTSD가 발생하는 사건은 다양하다. 죽음에 따르는 공포를 느끼거나 실제로 그런 상처를 입은 사건도 해당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역시 심각한 PTSD가 생길 수 있다. PTSD는 증상으로는 우선 침습(flashback)이 일어난다. 그와 관련한 이미지가 연상되고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일어나면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장소, 물건을 회피하게 한다.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강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PTSD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친구와 가족은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피병이거나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잘 이해하고, 그런 맥락을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맥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PTSD를 겪는 어른과 아이의 반응도 다르다. 아동과 청소년은 트라우마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증상을 보인다. 아주 어린 아동의 경우 야뇨증, 함구증, 공포 발작을 보이거나 부모에게 밀착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조금 큰 아이들과 청소년은 무례하고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자의 손상과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환자를 위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변화되면 가족들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상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

기간으로 구분한다면, 한 달 안으로 일어나는 증상은 급성 PTSD라고 한다.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증상은 만성 PTSD이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 지연성 PTSD다. 지연성 PTSD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 겪는 사람이 매우 힘들어한다. 트라우마의 경과를 짧게는 1주 이내에 발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는 30년이 지나서 발병하는 사람도 있다. 어렸을 때 문제가 뒤늦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발병 시에는 심리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은 자연 회복력을 갖고 있기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픔을 공유하면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기타 소수는 그 증상이 매우 악화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해소할 데가 없어 술을 마시거나 도박 및 게임에 중독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PTSD를 겪지는 않는다. 기질적으로 취약하거나,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쉽다. 가족 내에 서로를 돌봐주는 분위기 등의 환경이 있을 때 회복탄력성이 있어 덜 일어난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취약성이 더욱 강화되어 외부 스트레스에 더 심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는 인내력이 약해져서 객관적으로 별것이 아닌 어려움에도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3. 결론

트라우마,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켜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든다. 누구에게나 PTSD는 일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린 시절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했고, 가족 내에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탄력요인이 있다면 극복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탄력요인 없이 부정적인 강화요인만 있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트라우마는 홀로 극복하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을 파악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경청의 자세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환경이 조성된 가족 내에서 환자는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1)

1.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이념

8·15광복의 감격을 미처 다 누리기도 전, 대한민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상황을 맞아야만 했다. 남쪽엔 미군정이 들어섰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독립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1일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열렸다. 제헌의회는 만인평등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헌법’ 제정에 착수,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전문에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견고히 하며 모든 악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라고 함으로써 남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평등을 선언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만인평등의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8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에서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히 남녀평등 이념에 기초한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평등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 선포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하위법의 제정, 즉 민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 관습법과 일본 민법을 빌려다 쓴 당시 구민법의 경우, 재산편은 구일본 민법을, 친족상속편은 조선조 이래의 관습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일부만 일본 민법을 빌려 쓰고 있었다. 이는 만인평등과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제정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관습법 자체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므로 헌법정신에 상응하는 친족상속편의 제정을 서둘러야만 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였으며, 9월 25일자로 새로 임명된 김병로 위원장 명의로 법전편찬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직과 위원이 발표되었다. 그중 민법 II 신분법 분과위원회의 기초위원은 장경근, 일반위원은 민동식·김찬영·고병국·최규동·장이욱·이천상·김갑수 등이었다.¹⁾

편집부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1) 『법정(法政)』 3권 10호, 1949. 10, p.49. 『법제연구』 통권 제8호 005, 1995에서 재인용.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행위자인 부모가 자녀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수용하기를 바라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딸) 전화상담 1회 등 13회

상담기간

2021. 11. 29. ~ 2022. 5. 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20세)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오랜 기간 불화하던 부모가 2019년 이혼하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와 같이 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여 어머니가 집을 구하여 혼자 살게 되었고 행위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여 2020년 9월에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후 세 자녀(피해자, 아들/17세, 딸/11세) 모두 행위자와 살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이 조모 때문이라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2021년 1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던 피해자가 ‘아빠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행위자와는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평가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고, 2023년 2월에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인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용돈으로 쓰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연락하고 만나며, 동생들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으로 찾아와 만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동생들로부터 행위자가 주말에 마트에 같이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준다는 소식 등을 들었다고 하면서 행위자가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이나 태도 등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이는 행위자 또한 지향하는 바였기에 행위자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관점이 아닌 자녀 관점에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진행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향후 과제로 같이 살고 있는 두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것과 어머니에게 자식 도리를 다하는 것을 꼽고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언젠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폭력대화가 아닌 존중대화로 대화하고 폭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2021버3**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1. 7. 27. ~ 2022. 6.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21년 1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대화중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수차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흔들고 신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되었다.

갈등원인으로 피해자는 경제갈등(재테크 관련)과 생활방식 차이를, 행위자는 성격차이와 생활방식 차이 등을 꼽았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로,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직장 스트레스 등)를 잘 들어주고 공감 해주기를, 행위자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행위자의 의견도 들어주기를 꼽았는데, 부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바람을 수용하는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피해자는 자신의 월

급여 70%를 행위자가 관리하게 하고 30%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4~5점, 중간점검시는 8~9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 역시 행위자와 다투지 않고 잘 지냈고 부부간 이해심이 높아졌으며 행위자의 배려심을 느껴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연배가 높은 구성원들을 보고 자신도 '그 연배가 되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을 내려놓고 가사를 분담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잘 수용한 결과 피해자도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실천과제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부부존중대화를 유념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8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8/1	10명	삶의 의미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8/7	12명	인간관계, 사람마다 다른 한계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8/14	12명	인생, 가장 치열하게 산 세월	
		8/21	12명	부부사이, 가까워서 먼 사이	
		8/28	12명	희망,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삶	
동지교실	8/7	36명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8/22	25명	과학으로 본 분노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①

●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문 27 | 사별 후 조카들을 키우던 누나가 최근 중병에 걸려 조카들을 제가 입양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입양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한지요?

A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동법 제878조). 만약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동법 제883조 제2호).

●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지

Q 문 28 | 언니가 5년 전 형부와 사별 후에 조카를 어머니와 제게 맡겨두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곧 조카가 초등학생이 되는

데 부모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언니는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조카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동법 제 869조)과 부모의 동의(동법 제870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동법 제869조 제2항).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869조 제3항). 이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외에도 장기간의 의식불명, 불치의 정신병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나 친권상실 신고를 받은 경우 혹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70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조카의 법정대리인인 언니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입양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입양허가를 받으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2024) 중에서



Q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임신 중단을 종용하며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저는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 혼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사정하여 저와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는 마쳤으나, 출생 이후 자녀 양육에 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벌써 25세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82스21 결정).

이러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

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2024. 7. 18.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위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다시 말하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성인이지만 아직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자녀의 친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의 출생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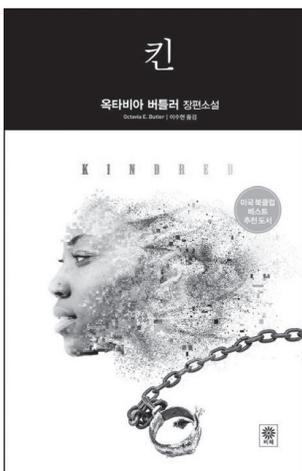
권지연 상담위원



킨

옥타비아 버틀러 장편소설,
이수현 옮김

비채, 2018(1판 6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여행에서 팔 하나를 잃었다. 왼팔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다.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한 책이어서 여행지가 어디인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 『킨』의 주인공 다나, 1976년 6월 9일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약 혼자 케빈과 동거를 시작한 다나는 짐 정리로 분주하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진다. 그녀가 몸을 일으킨 곳은 1815년 메릴랜드주의 숲속이었다. 그곳에서 호수에 빠진 한 소년을 발견해 구해내고 몇 분 뒤 다시 1970년대로 돌아온 다나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또 과거로 끌려간다.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 당연시되던 시대, 1815년. 언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흑인 여성 다나는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과거의 세상에서 만나 구한 농장주의 아들, 백인 소년(루퍼스)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

책의 제목 “킨 KINDRED”은 ‘동류의’, ‘일족의’ 그리고 ‘혈연’이라는 뜻이다.

이 소설을 쓴 옥타비아 버틀러는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출신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난독증에 시달렸지만 책과 이야기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으며, 열 살에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성인이 된 후 여러 대학과 워크숍을 거치며 글쓰기를 계속하여 1976년 첫 작품 『패턴마스터』를 내놓으며 작가로서 삶을 시작했다. 버틀러는 그때까지 백인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SF 계에서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둔 흑인 여성 작가라는, 특별

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역사, 판타지, 과학을 융합한 ‘아프로퓨처리즘’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며, 페미니스트로서 인종과 젠더 문제를 작품에 완벽하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SF계의 “그랜드 데임”으로 추앙 받아온 옥타비아 버틀러는 2006년 2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버틀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1979년 작 판타지 소설인 이 작품은 현대의 흑인 여성이 노예제가 시행되던 과거로 타임슬립을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으며 현대의 고전 반열에 오른 걸작 장편소설이다. 이 이야기는 타임슬립을 거듭하며 100여 년의 시공간을 오가는 흑인 여성 다나를 통해 인종, 노예, 젠더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권력과 인간의 근원적 감정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소설적인 재미는 500면이 넘는 장편을 단숨에 읽게 만든다.

“1976년 6월 9일은 내 생일이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 1815년의 메릴랜드다. 이제 나는 꿈 많은 작가 지망생도, 말썽쟁이 조카도, 사랑스러운 아내도 아니다. 축사의 짐승, 식탁 밑의 밀 포대나 다름없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자유와 권리는 내게 없다. … 그리고 나의 이름은 ‘검둥이’가 되었다.”

책에 덧붙여진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의 ‘옥타비아 버틀러에 대한 비망록’도 인상 깊다.

이수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이 재 민

동국대학교 법학과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저는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님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웠고, 그 상담소가 한국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이어져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백인변호사단 분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지금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이번 연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법률 구조 활동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족법은 흔히 말하는 '돈이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수활동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껴야 할 가정이 온전치 못한 내담자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법 조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많은 법조인이 외면하던 가족법 분야가 그러한 이유로 쉽게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시험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다양하고도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경험 삼아, 더욱 유능한 인물이 되어 더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빈

동국대학교 법학과

연수활동에 지원할 때까지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족법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서 작업 내지는 행정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리라 생각했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상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전화 통화를 하며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비어있었던 법률적 지식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슈어, 안내책자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통해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 알고, 사이버 상담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면서 가족법에 관한 지식을 제 말로써 구체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을 관리하는 업무 및 교육부에서 가정폭력 근절 영상을 보여드리는 업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교화가 교육으로도 가능한 측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접수 및 내용을 기입하는 업무를 통해 혼인, 사실혼, 자녀, 입양, 후견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야간 변호사 상담과 법원 참관을 하면서 법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통해서 법률적인 구조를 위해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저 또한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저는 가족법에 대해 보다 실무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법률구조라는 법률 서비스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민간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공익적인 목표를 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 실무자 간담회

8월 29일 본소에서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법률구조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법률구조서비스플랫폼에 참여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학재 과장(기획조정실 디지털플랫폼부), 김미연 과장, (주)에치씨엔씨 왕인기 상무, 박용구 수석, 전병오 전문위원 등과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정상원 전산담당자 등이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활동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총 4차에 걸쳐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2일에는 ‘과학으로 본 분노’를 주제로 본소 8층 강당에서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에서는 분노에 대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노를 인간의 본능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어 사회적 교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은 분노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분노를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올해의 마지막 강의로 오는 11월 21일 '부부대화법'을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1644-7077, www.lawhome.or.kr)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8.13. 강서지역자활센터 - 생활법률
- 박슬기 변호사
- 8.28. 서울1366 -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의 실무와 쟁점
- 복미영 상담위원
- 8.28. / 8.29 자원봉사 대학생을 위한
법률구조의 이해와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2024년 8월 상담통계

총 건수 4,437				
법률상담 (3,717)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1,013	2,581	110	11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22		42		56

• 인터넷 정보 이용 94,670 건

2024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437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7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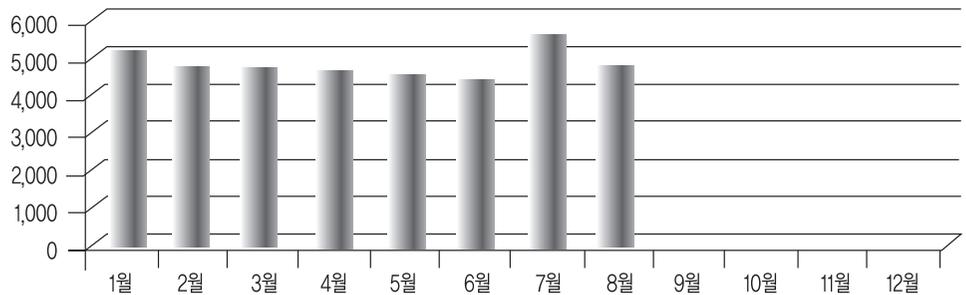
(83.8%), 화해조정 622건(14.0%), 소장 등 서류작성 42건(1.0%), 소송구조 56건(1.3%)이었다.

법률상담 3,71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7월에 비해 부부갈등(2.9%→3.5%), 위자료·재산분할(5.3%→6.2%), 친권·양육권(4.2%→4.7%), 면접교섭권(1.3%→1.9%), 인지(1.3%→1.6%), 친생부인(0.7%→0.8%), 친생자존부(1.4%→1.6%), 입양(1.1%→1.5%), 파혼(0.2%→0.4%), 혼인무효·취소(0.6%→0.7%), 이혼무효·취소(0.0%→0.1%),

부양(0.7%→0.9%), 유언·상속(8.2%→8.3%), 가족관계등록부(2.3%→2.9%), 친양자(0.4%→0.5%), 개명(0.9%→1.1%), 미성년후견(1.2%→1.9%), 성년후견(2.5%→3.1%), 가사절차(3.5%→6.8%), 파산(1.6%→1.9%), 형사기타(1.0%→1.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71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13건(27.3%), 전화상담 2,581건(69.4%), 인터넷상담 110건(3.0%), 서신상담 11건(0.3%), 지상상담 2건(0.1%)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 대학생현장체험실습

이화여대 경영학과 (7.1-8.30.)

- 박채영, 이지호

동국대 법학과 (8.1-8.29.)

- 송도윤, 이준엽, 정기석, 조원준

● 가정법원 출장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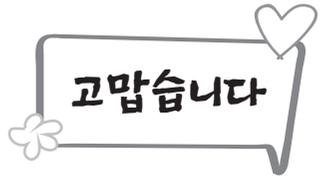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양육비이행관리권 주최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당일 오후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 조정을 하였다. 28일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가 주최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가족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는 법무부 주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법률구조공단 주최로 본소에서 진행된 법률구조기관 홈페이지구축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14일 김현옥 재무회계 과장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조희원 주무관과 유연근무 및 육아병행지원제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7일에는 차연실 상담위원과 함께 서울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박상희 양성평등팀장, 김성혜 주무관과 본소 가폭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8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용평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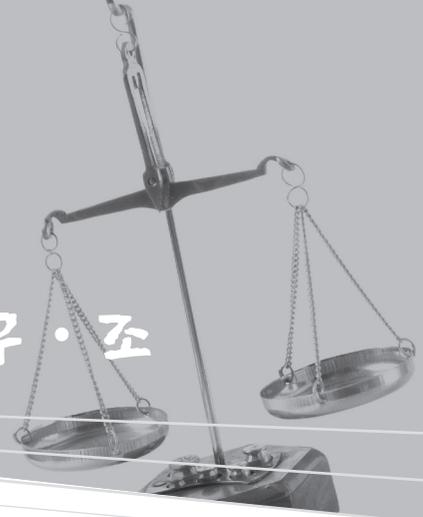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17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4-1-7

담당 : 문형승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5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왔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와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피고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폭행으로 임신 7개월 무렵 유산하였다. 2007년경 피고의 계속된 폭행으로 원고는 집을 나왔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원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피고와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이에 원고는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4. 7.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을 강요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4-1-23

담당 : 정창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30대)는 2020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남, 3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프랑스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의 심한 폭행에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이웃이 신고한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여름경 피고는 누워 있는 원고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데이트 앱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을 만나고 외도 사실을 거리낌 없이 원고에게 말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조정성립일 현재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조정성립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일정 및 방법

1) 월 1회, 원고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프랑스로 가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는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사건본인과 원고의 이동 왕복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다만, 위 일정 외에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서로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며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는 화상통화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하기로 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유일한 친권자인 친모의 사망으로 외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24-1-14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50대)은 사건본인(남, 5세)의 외조부이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혼인하지 않은 채 홀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사건본인은 부를 알 수 없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등재되어 있고, 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생후 5개월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양육시설에서 양육하였는데, 2023년 2월 사건본인의 친모 사망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사건본인은 유일한 친권자인 친모의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2023년 7월 경기도 파주시장으로 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예정이다. 이에 사건본인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3.)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4. 10.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기준일 2024. 4. 30.,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5. 1. 31.을 시작으로 매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제출전년도 12.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37. 6. 30.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기준일 2037. 6. 8.)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286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40대)와 채무자(여, 40대)는 2014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20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였으나 채무자는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6.)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4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9월 23일, 10월 28일, 11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5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